

	<h2 style="margin: 0;">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칙</h2>	규정번호	4-0-2
		제정일자	2003.03.01
		개정일자	2019.09.01
		개정번호	Ver. 10 총페이지 3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기능) 센터는 교수학습 능력 강화, 학습향상 제고를 위하여 교수방법·강의평가·교육매체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연구·개발, 교육 및 자문, 기타 교육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 <개정 2019.09.01.>

제 2 장 조 직

제3조(센터장) 센터에서는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조직과 업무) 센터에는 교수지원부, 학습지원부, 기초학습능력향상지원부, 매체개발부를 둔다. <개정 2019.09.01.>

- ① 교수지원부: 교수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, 강의개선을 위한 자료 지원, NCS 교수법 연구·개발·보급, 교수법 관련 만족도조사·평가·분석, 연수 및 교육 필요시 교내외 전문가 초빙, 세미나 개최 등
- ② 학습지원부: 학습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, 학습자 만족도 조사, 교육환경 개선 연구, 학습법 안내서 개발·발간,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등
- ③ 기초학습능력향상지원부: 기초학습능력 관련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운영, 기초학습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, 기초학습능력 관련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 등
- ④ 매체개발부: 교수학습 관련 콘텐츠 개발·교육·자문, 교육매체 제작·활용에 관한 연구·개발, 교수학습능력개발 및 멀티미디어 관련 연구과제 계획·개발, 스튜디오 및 제작용 기자재 운용·관리
- ⑤ <삭제 2019.09.01.>

제5조(연구원 및 매체관련 전공자) 센터에는 아래 자격을 갖춘 연구원, 매체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으며, 총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.

- ① 연구원은 교수학습 관련 분야 석사학위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
- ② 매체관련 전문가는 매체제작에 관련한 전문가이거나 교육공학 설계 전공자

제6조 <삭제 2019.09.01.>

제7조 <삭제 2019.09.01.>

제 3 장 위 원 회

제8조(위원회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(구성과 임기) ① 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본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단, 교무부처장, 산학협력부처장, 기획부처장, 종합정보지원실장,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19.09.01.>

③ 본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중임 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④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.

⑤ <삭제 2019.09.01.>

제10조(직무)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확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1. 회의 일시·장소 및 출석위원의 날인
2. 토론·심의내용 및 의결내용의 요지

제11조(임무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부의 할 수 있으며, 또한 심의·자문한다.

1. 본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
2. 본 센터의 연간 예산·결산의 심의
3. 기초학습능력 인증의 심의
4. 교내 연구과제의 선정, 연구결과 검토
5. 센터관련 규칙 개폐
6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2조(회의) ①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.

②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의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④ 필요한 경우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

제13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의 개정은 제11조 4호에 따라 본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각 부서장이 대출한 기자재는 2002년 3월 31일 이전에 모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.
- (3) (규정폐지)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교육공학센터규정을 폐지한다.
- (4) (경과규정) 교육공학센터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교수학습개발센터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